

고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00
------	-----

제출년월일 : 1999. 4. 13.

제 출 자 : 고 성 군 수

1. 개정이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 하는 것이 예상되는 비서관 또는 비서등에 대하여는 근무상한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임용자격중 미비사항 보완(안 제4조)
 - 비서관 또는 비서의 자격
- 전보가능 직위 제한 (안 제7조)
 - 단위기관내 동질업무직위로 한정
- 근무상한 연령 단서조항 신설 (안 제8조)
 - 비서관 또는 비서에 대한 상한연령 적용 제외

3. 참고사항

- 관련근거 : 표준안 시달 (총무 12100-737, '99. 11. 20)

4. 본 문 : 붙임과 같음

고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이 조례는 법제2조제3항제2호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본문 중 “단위기관에서 전보”를 “단위기관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장 및 지방의회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